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31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신성범·김종양·송언석

김용태 • 이종배 • 조은희

인요한 • 박정하 • 이성권

서일준 · 김상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각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각 부처에서 장관이 협의를 통하여 빈집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 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빈집에 대한 통합적 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법률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5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할구역의"를 "해당 빈집밀집구역을 관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도지사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다른 빈집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빈집정 보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빈집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 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의 연계 기준 · 방법 및 절차, 연계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국 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u>시·도지사는</u> 실태조사 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	
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이하"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	
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지사는</u> 빈집정보시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
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④ <u>시·도지사는</u> 빈집정보시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기관이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u>시·도지사는</u> 안전사고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 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는 <u>관할구역의</u> 시· 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 공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인터넷과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해당 빈집밀집구
역을 관할하는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다른 빈집정보시스템
과의 연계)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
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빈집정보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빈집정보시스템과의 연
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 템의 연계 기준·방법 및 절차, 연계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 령으로 정한다.